

보 도 찬 고 자 류



		- - - - - - - - - -				ERVIC.	
금융위원회	보도	배포시	배포	배포 2019.3.20.(수)		··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	송 현 금융위	원회 금융혁신과장 도(02-2100-2530) 원회 샌드박스팀장 1 인(02-2100-2841)	담당	ŀ TL	박 정 원 사무관 이 소 민 사무관		
책 임 자 		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장경운(02-3145-7120)		s ^r	김 용 태 부국장(02-3145-7125) 송 경 용 팀장(02-3145-7130)		
	-	핀테크지원센터 사무국장 황인덕(070-4481-9002)			김 세 진 팀장((성 백 규 과장(()70-8873-9005))70-8872-9004)	

제 목 :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완료 및 향후 추진 일정

- 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(4.1일)에 맞추어 그간 진행해 온 시행령. 고시 등 하위법규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
- ◆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금주 중 마무리하고, 3월말 우선심사 대상(20여건) 사전보고
- ㅇ 이를 통해 확정한 우선심사 대상(20여건)을 법 시행일(4.1일)에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예정
- ★ 법시행(4.1일) 전 사전신청(1.21~1.31일)한 105건은 우선심사(4월) 및 일반심사 절차(5~6월)로 나누어 진행하고, 이후 추가 신청접수(6월)를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
 - ① (우선심사 대상) 20여건은 4월중 처리 마무리
 - * 1차 지정 : 4.8일 혁신위 심사 → 4.17일 금융위 개최 2차 지정: 4.22일 혁신위 심사 → 5.2일 금융위 개최
 - ② (일반심사 대상) 85건은 5~6월중 처리예정 → 사전신청 105건 처리를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
 - ③ (추가 신청) 일반심사 처리기간(5~6월) 중 사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 이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
 - ⇒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 · 운용

│.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마무리

- □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**금융혁신지원 특별법**이 지난 '18.12.7일 국회를 통과하여 '18.12.31일 공포, **'19.4.1일 시행 예정**
- □ 4.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**시행령, 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** 절차 신속 마무리
 - 금융혁신법 시행령은 3.19일 국무회의 의결
 - 금융위 고시(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)는 금일(3.20) 금융위 의결
 - * [시행령] ('18.12.31일)입법예고 → (3.6일)금융위 상정 → 법제처 심사 → (3.14일)차관회의 → (3.19일)국무회의 [고시] ('18.12.31일)규정제정예고 → (3.20일)금융위 상정
- ⇒ 이에 따라 4.1일 법 시행을 위한 **규제샌드박스 법체계 완성**
 - ※ (참고)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하위법규 주요 내용

Ⅱ.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

- □ **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심사 및 출시**를 위해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5명 이내에서 **금주중 인선을 마무리**할 예정
 - ※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(25인 이내)
 - ① 당연직 위원
 - (위원장) **금융위원회 위원장**
 - (정부위원) 관계부처 차관(급) 공무원
 - * 국조실, 기재부, 샌드박스 관련부처(금융위, 과기부, 산업부, 중기부)로 구성
 - (유관기관) **금융감독원 부원장, 핀테크지원센터장**
 - ② **민간 위촉위원(15명 내외)**: 기술·금융/법률/소비자분야 전문가

Ⅲ.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

1. 추진경과

- □ 그간 금융위, 금감원은 **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**를 위해 **법시행**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
 - **사전신청**(1.21 ~ 1.31) 결과,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에 따라 **88개사가 105개 서비스 신청**
 - * **88개사**(금융사 15개, 핀테크기업 73개)**, 105개 서비스**(금융사 27개, 핀테크기업 78개) **제출** (※ 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)
- □ 이 중 혁신성, 서비스 조기 출시 가능성,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 하여 **우선심사 대상을 선정**
 - **3월초 우선심사 후보군 40건을 확정**하고 심사요건 검토 등을 거쳐 **우선심사 대상 20여건 선정**
 - 심사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복잡한 과제*는 추후 심사
 - * 예시) 타부처 소관규제 포함 등
- □ 금주중 혁신위 조기 구성을 마무리 후, 금융위/금감원 <u>실무검토</u> <u>결과를 사전보고 예정</u>
 - 보고 과정에서 심사기준 충족 여부,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하여 <u>우선심사 대상 확정 예정(3월말)</u>

2. 향후 추진 일정 (잠정)



1. 우선심사 대상 20여건 (⇒ 4월중 처리)

< 우선심사 대상 처리 일정(잠정) >

月	火	水	木	金	土	日
4.1 (법시행)	2	3	4	5	6	7
1 1차 혁신위		❷신청 공고				
(위촉식 등)	<		\longrightarrow			
8	9	10	11	12	13	14
③ 2차 혁신위						
(안건심사)						
15	16	17	18	19	20	21
		4 금융위원회				
		(1차 지정)				
22	23	24	25	26	27	28
⑤ 3차 혁신위						
(안건심사)						
29	30	5.1	5.2	5.3	5.4	5.5
			6 금융위원회			
			(2차 지정)			

- □ (4.1일) 법시행일 즉시 ¹ 학신위(4.1일)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식, 향후 혁신위 운영방향 확정
 - 이와 함께, 혁신위 사전보고를 통해 확정된 **우선심사 대상자** 서비스 내용(약 20여건)을 공개
 -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에 대해 ²1차 신청공고(4.2~4.4일, 잠정)를 통해 정식 접수
 - ※ 1월중 사전접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,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이 필요
- □ (1차 지정) ⁶2차 혁신위 개최(4.8일)하여 안건 심의를 거쳐 ⁶금융위 회의(4.17일)에서 1차 지정(10여건)
 - * 20건 일괄 지정은 회의시간 제약상 한계(타부처의 경우 통상 1회 회의시 5건 내외 안건 상정인 점 등을 감안)
- □ (2차 지정) 남은 10여건에 대해 ^⑤혁신위 개최(4.22일)하여 심의 후
 ⑥금융위 회의(5.2일)에서 2차 지정

2. 일반심사 대상 약 85건(⇒5~6월중 처리)

□ 우선심사 대상지	ㅏ(약20건) 이외	의 사전신청	건(약85건)은	일반심사
절차로 진행 예기	정			

- *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(약 20건),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(약 65건)
- □ 우선심사 대상 지정 마무리 즉시, 4월말~5월초(잠정) 2차 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중(5~6월중) 추가 지정
 - **사전신청 105건이 상반기 내 마무리**될 수 있도록 혁신위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, 혁신위, 금융위 지속 개최

3. 추가심사 대상 $+\alpha$ 건($⇒5\sim6$ 월중 컨설팅, 6월 접수, 하반기 처리)

- □ 추가 신청 예정인 건에 대해서는 **일반심사 처리기간(5~6월) 중 사전설명회, 컨설팅 실시**
 - 1월 사전신청 접수 과정에서 **규모가 영세한 핀테크 기업**들의 경우 **신청서 작성이 어렵다**는 의견 제시
 - 이에 따라 사전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**신청서 작성등** 밀착 지원
 - * 사업계획 컨설팅, 신청서 보완, 법률자문 등
- □ 일반심사 지정절차가 마무리된 즉시, **6월 신청공고**를 통해 접수를 받고 **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**
 - → **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**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·운용

<별 첨> 금융혁신법 및 하위법규 주요내용



참고

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하위법규 주요 내용

가.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: 규제 샌드박스

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

- **(신청자격) 핀테크 기업**(상법상 회사)과 **금융회사등**(은행·보험· 금투업자, 전금업자 등, 금융업 영위 공사·기금*, 금융권 협회 등)(제5조)
 - * 주금공, 신보, 농신보, 예보, 자산관리공사, 기보, 예탁원, 거래소
- (신청 서비스)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·방식·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(이하 '혁신금융서비스')(제2조제4호)

② 혁신금융서비스 심사·지정

- (심사·지정 주체)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되, 산하에 혁신금융서 비스의 심사를 위한 '혁신금융심사위원회*' 설치(제13조①)
- ※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(25인 이내)
 - ① 당연직 위원
 - (위원장) **금융위원회 위원장**
 - (정부위원) 관계부처 차관(급) 공무원
 - * 국조실, 기재부, 샌드박스 관련부처(금융위, 과기부, 산업부, 중기부)로 구성
 - (유관기관) **금융감독원 부원장, 핀테크지원센터장**
 - ② 민간 위촉위원(15명 내외): 기술·금융/법률/소비자분야 전문가
 -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(제15조)
 -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
 -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의 제**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근거 마련**
- (심사기준) ①서비스 혁신성 ②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③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④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⑤소비자보호방안의 충분성 ⑥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(제13조④)

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

- (규제특례) 지정받은 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규제는 적용되지 않음(제17조①)
 - 인허가·등록·신고, 지배구조·업무범위·건전성·영업행위, 사업자 감독·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 인정
 - * 타 부처 소관 법령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
- (특례 제외대상) 다만,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우려,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, 특례인정 불가(제17조②)

④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보호

- **(감독·제재) 테스트 환경에 적합**하게 구성된 **특별법 규정*** 적용 (제7조, 제29조, 제33~35조)
 - * 예 : 지정내용을 벗어나서 테스트를 실시한 경우 지정취소, 형사처벌 등 제재
 -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, 금융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경우 지도·시정
 - 소비자 피해 발생 등 비상상황시 중지명령, 변경조치(제11조)
- **(소비자보호방안 마련) 사업자**에게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**마련**토록 하고 방안이 **충분한 경우에만 테스트 허용**(제13조, 제19조)
 -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소비자보호 방안* 등을 함께 제출 * 이용자의 범위 제한, 거래위험 고지,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
- (소비자 권리구제)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(입증책임 전환)하고 사업자의 배상 여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이행 보장장치 마련(제27조)

-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나, **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**하면, 배상책임을 **부담하지 않음(입증책임 전환***)(제27조①)
 - * **민사소송원칙**에 따르면 손해배상요건을 <u>충족함을 소비자</u>가 입증해야 하나, 입증책임 전환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**사업자**가 입증 필요
- 사업자에게 배상책임 이행 보험 가입을 의무화(제27조②)하고, 가입 불가할 경우 사유서와 손해배상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 필요
 - ·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 체결 시,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이용자에 책임보험 가입여부(또는 배상계획서 내용) 안내의무 부과

5 테스트 종료후 후속조치 : 검증된 서비스의 시장 안착 지원

- **(지정효과 실효)** 테스트 기간(최대 2년 이내에서 지정시 결정) 종료시 규제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*(제9조)
 - * 기타 종료 사유 : 지정 취소, 합병 등으로 인한 조직변경, 자진철회 등
 - 다만, 필요성 인정 시, **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가능**(제10조)
- (시장안착 지원)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개선 신속 추진
 - 테스트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일부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의견제시 등을 통해 심사 절차 지원(제21조②)
 - 시범서비스의 정식 시장출시를 위해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혁신심사위원회가 **입법조치 권고**(제13조⑤)
- (배타적 운영권)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(제23조)
 - ※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 (의원안 : 1년)

나. 기타 제도 : 지정대리인 제도. 규제신속 확인제도

규제신속 확인제도 (제24조)

-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**규제 불확실성 해소를** 위해 금융위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등^{*}의 적용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
 - * 법령, 행정규칙,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
 - 금융위는 소관 법령 등에 대해서는 직접,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회신
 - * 특히, 그간 **타부처 소관**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으나, 금융혁신법 제정으로 **원스톱 서비스**가 가능해짐

② 지정대리인 제도 :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(제25조)

- 금융위는 서비스의 **혁신성, 소비자 편익**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를 **테스트**하려는 **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**으로 **지정**
 -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의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정 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 위탁 가능
 -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지정대리인을 관리· 감독하여 이용자 피해 및 위험발생 방지

다. 혁신금융서비스 예산 지원 근거 마련

- □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지원될 수 있도록,
 - 정부가 예산 등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26조)
 - 이를 지급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**목적 외의 용도**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하면 이를 **회수할 수 있도록 함**